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1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08일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 경, 김기덕, 김영철,
김원태, 민병주, 유만희,
유정희, 이영실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
황유정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'24년 기준,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.58명으로서 혼인의 감소 및 혼인 후 사회적 환경 및 각종 여건 등의 사유로 출산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중요성과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의 필요성 절실
- 특히, '양육친화적 문화 조성'에 있어, 다자녀 가족의 일환인 임신부 및 유아동의 축제, 행사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,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, '우선입장 제도'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, 다자녀가정의 중요성과 지속적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임신부 및 유아동 등의 우선입장제에 대한 조항 신설 (안 제7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3(우선입장제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·행사 등에 임산부 및 유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)과 그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우선입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하게 할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우선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3(우선입장제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나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·행사 등에 임산부 및 유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)과 그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우선입장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하게 할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③ 그 밖에 우선입장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3(우선입장제)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·행사 등에 임신부 및 유아동과 그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우선입장하게 하는 제도¹⁾를 마련하고자 것으로 우선입장 운영방식에 따라 비용발생 여부²⁾가 달라질 수 있어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특별한 재정소요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-
- 1) **[제도안내]** 우선입장제는 공공시설과 문화·스포츠 행사 등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관람객이 긴 줄을 서지 않고 별도의 전용 입구로 입장(=입장대기 없이 즉시입장)하는 제도임
※ 참고로 해당 제도는 '어린이 행복프로젝트'의 하나로 서울시설공단이 고척스카이돔에서 기운영하고 있음
 - 2) **[제도에 따른 재정소요 영향검토]** 우선입장제 운용방식에 따라 비용소요가 달라질 수 있어 ①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② 입구설치와 관련된 설치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
 - ① **(인력배치 측면)** 축제 및 행사 시 별도 전담인력을 배치할 경우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, 기존인력을 활용 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은 낮을 것으로 보임
 - ② **(별도 입구설치 측면)** 전용입구를 마련할 시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으나 행사 시 통상 안전가이드를 위한 차단봉(가령 기존 차단봉 활용) 설치 등으로 입구를 구분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해당 사안 또한 별도 입구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